

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규정

2026. 04. 30. 제 정

제1장 총칙

제 1 조(목적)

이 규정은 주식회사 루닛(이하 "회사"라 한다) 이사회 내에 설치된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효율적인 운영과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 조(적용범위)

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, 정관 또는 이사회 운영규정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2장 권한과 책임

제 3 조(직무와 권한)

- ① 위원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사외이사 후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.
- ② 위원회는 사외이사 후보군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고 사외이사 후보로서의 자격에 대해 심사한다.
- ③ 위원회는 제 1 항 내지 제 2 항 외에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과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.

제 4 조(사외이사 후보의 선정 기준)

- ① 위원회는 상법 제 382 조제 3 항 각 호 및 제 542 조의 8 제 2 항 각 호의 사외이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고, 주주와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외이사 후보 대상으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회는 후보 선정 시 이사회에의 전문성 및 다양성(성별, 연령, 국적, 문화적 배경 등)과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- ③ 특히, 위원회는 인공지능(AI) 기반 암 진단 및 치료 예측 솔루션을 제공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이라는 회사의 고유한 산업적 특성과 해외 비즈니스 확장 스케일을 반영하여,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한 최고 수준의 전문지식이나 실무 경험을 보유한 자를 후보로 우대하여 발굴 및 검증하여야 한다.
 1. 의료, 제약 및 헬스케어 산업 비즈니스
 2. 인공지능(AI) 및 IT 핵심 기술, 의료 데이터 윤리
 3. 글로벌 스탠다드 비즈니스 및 해외 의료기기 인허가(FDA, CE 등) 규제 대응, 글로벌 컴플라이언스
 4. ESG(환경·사회·지배구조) 및 지속가능경영
 5. 재무, 회계, 법률 및 전사적 리스크 관리

제3장 구성

제 5 조(선임 및 구성)

- ① 위원회 위원(이하 "위원"이라 한다)은 이사회에의 결의로 선임하고 해임한다.
- ② 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며, 거버넌스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 위원의 과반수는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이 사임, 임기만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 2 항의 구성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이사회에서 위원회의 구성요건이 충족되도록 신규 선임하여야 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의 이사 임기 만료일까지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 6 조(위원장)

- ① 위원회는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위원장을 사외이사 중에서 선출한다.
-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되며,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별로 업무를 분장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 유고 시에는 먼저 선임된 위원의 순서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 단, 선임일이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.

제4장 회의 및 운영

제 7 조(회의의 소집)

- ① 위원회는 정기위원회와 임시위원회로 구분한다. 정기위원회는 연 1 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사외이사 선임 수요 등 결의 대상 건이 발생하는 경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시로 임시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③ 각 위원은 위원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집을 청구한 위원이 직접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.
- ④ 위원회를 소집함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, 안건을 정하여 늦어도 회의 개최 3 일 전까지 각 소속 위원에 대하여 우편, 전자문서,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⑤ 소속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제 4 항의 소집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열 수 있다.

제 8 조(결의방법)

-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
- ③ 위원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

제 9 조(결의 및 부의사항)

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주주총회에 상정할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
2. 사외이사 후보군 발굴 및 관리, 선정 기준의 수립
3. 기타 사외이사 후보 추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

제5장 보칙

제 10 조(관계인의 의견 청취 및 전문가 자문)

- ①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- 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결의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.

제 11 조(통지의무 및 보고)

- ① 위원회는 결의된 내용이 있는 경우 이를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② 제 1 항의 통지를 받은 이사 및 위원회에 출석한 이사는 위원회 결의사항의 재결의를 위한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.

제 12 조(의사록)

-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제 13 조(간사)

-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간사를 둘 수 있다.
- 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보좌하고, 관련사무를 관장한다.

제 14 조(규정의 개폐)

- ①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.
- ② 이 규정이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정관, 이사회 운영규정 및 관련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.

부칙(2026.04.30.)

제 1 조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6 년 4 월 30 일부터 시행한다.